

의안 번호	48
----------	----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2. 11. 25.

전문위원 김 동 성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나. 의안번호 : 제48호

다. 제출일자 : 2022. 11. 14.

라. 회부일자 : 2022. 11. 17.

2. 제안이유

- 미래의 주역인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맞벌이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여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기존에 운영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중 위탁기간이 2023년 5월에 만료되는 시설의 재위탁을 추진하기에 앞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재위탁 대상 시설

연번	시설명(원장)	소재지(행정동)	현 위탁체(대표)	정원/현원	현 위탁기간
1	동아라온 (천 금 순)	장월로1길 28 (월곡2동)	개인 (천 금 순)	28/26	2018.06.01. ~ 2023.05.31.
2	엔젤 (박 미 자)	보국문로 116 (정릉4동)	개인 (박 미 자)	24/24	
3	통통 (김 미 라)	화랑로48길 16 (석관동)	개인 (김 미 라)	35/34	
4	파아란 (손 은 미)	솔샘로24길 15 (정릉4동)	개인 (손 은 미)	49/41	

○ 위탁기간 : 2023.06.01. ~ 2028.05.31.(5년)

○ 위탁심의 : 성북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재위탁 여부 결정(2023.02.예정)

나. 위탁 사업의 범위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
- 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지방자치법」 제117조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5. 검토의견

□ 동의안 개요

- 본 동의안은 ‘국공립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의 관리·운영에 대한 사무를 계속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성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 주요내용

- 동아라는 외 3개소 어린이집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5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현 위탁자를 대상으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후 재위탁을 추진하려는 것이며, 5년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임.
-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규정하고 있고, 현재 성북구는 총 88개소가 운영 중이며, 구립 어린이집은 민간위탁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음. 재위탁 대상시설 현황은 다음과 같음

〈재위탁 대상 어린이집 현황〉

연번	시설명	면적	정원 (현원)	교직원	위탁체	행정동	평가인증	비고
1	동아라운	129m ²	28명 (26명)	11명	개인(천금순)	월곡2동	A	관리동 전환 무상사용 협약 (10년)
2	엔젤	102m ²	24명 (24명)	10명	개인(박미자)	정릉4동		
3	통통	167m ²	35명 (34명)	9명	개인(김미라)	석관동		
4	파아란	183m ²	49명 (41명)	11명	개인(손은미)	정릉4동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 어린이집 운영사무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1)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이하 “영유아보육 조례”)제13조제1항2)에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7항3) 및 「영유아보육 조례」 제14제1항4)에서 ‘구청장은 기존수탁자의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어린이집 재위탁 추진은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종합의견

- 이상을 종합해 보면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동의안이며,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하는 바, 본 사무의 재위탁 추진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 1)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3조(위탁운영) ① 국공립어린이집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3)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⑦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제6항에 따른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4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위탁기간 만료 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모집하거나 재위탁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1.3.)